

제 14 장 중소기업

제 14.1 조 일반원칙

1. 양 당사국은 각국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증진하는 데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하며,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와 성장 증진에 협력한다.
2.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이행될 중소기업 협력에서 민간 부문의 필수적인 역할을 인정한다.

제 14.2 조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협력

중소기업의 상업적 기회를 향상하기 위한 양 당사국 간 보다 강력한 협력을 위하여, 각 당사국은 무역 및 투자 기회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, 특히 다음을 한다.

- 가. 우수 관행 공유, 시장 조사 교류 및 중소기업의 국제 무역 참여와 현지 시장에서의 사업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하여, 중소기업 전담센터,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, 수출지원센터 그리고 적절한 그 밖의 센터를 포함한 양 당사국의 소기업 지원 인프라 간 협력을 증진한다.
- 나. 여성 및 청년 소유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육성과 그러한 중소기업 간 동반자 관계와 그들의 국제 무역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업을 강화한다.

- 다. 자본 및 신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 개선, 적용대상정부조달 기회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및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응 지원 등에 대한 정보 및 우수 관행을 교환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력을 향상시킨다. 그리고
- 라.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공급자, 구매자 및 그 밖의 잠재적 사업 파트너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가 및 상담사가 정보 및 우수 관행을 공유할 수 있도록, 특별한 목적으로 구축된 모바일 또는 웹 기반 플랫폼에 대한 참여를 장려한다.

제 14.3 조 정보 공유

1.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, 무료로 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자국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유지한다.

가. 이 협정의 문안

나. 이 협정의 요약, 그리고

다. 다음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만들어진 정보

- 1) 당사국이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설명, 그리고
- 2) 이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회로부터 혜택을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유용할 모든 추가적인 정보

2. 각 당사국은 자국의 웹사이트에 자동 전자 전송을 통한 다음에 대한 링크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.

- 가. 다른 쪽 당사국의 동등한 웹사이트, 그리고
- 나. 당사국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무역, 투자 또는 사업을 하는 데 관심이 있는인에게 유용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국의 정부 기관 및 그 밖의 적절한 단체의 웹사이트

3.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, 제 2 항나호에서 기술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- 가. 통관 규정, 절차 또는 문의처
- 나. 지식재산, 영업비밀 및 특허보호권에 관한 규정 또는 절차
- 다. 기술 규정, 표준 및 품질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
- 라.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
- 마. 외국인 투자 규정
- 바. 사업자 등록
- 사. 무역 진흥 프로그램
- 아. 경쟁력 프로그램
- 자. 중소기업 투자 및 자금조달 프로그램
- 차. 과세 및 회계
- 카. 정부조달 기회, 그리고
- 타. 당사국이 중소기업에 유용하다고 여기는 그 밖의 정보

4. 각 당사국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언급된 웹사이트의 정보 및 링크가 최신이고 정확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와 링크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.

5.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, 이 조에 기술된 정보가 영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. 이 정보가 이 협정의 다른 정본 언어로 이용 가능한 경우, 그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한다.

제 14.4 조 중소기업문제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국가 및 지방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중소기업문제위원회(이하 “중소기업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2. 중소기업위원회는

가. 양 당사국 영역 내 중소기업이 이 협정에 따른 상업적 기회를 이용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확인한다.

나.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간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확인하고 권고한다.

다. 여러가지 중에서 특히 훈련 프로그램, 무역 교육, 무역 금융, 무역 사절단, 무역 원활화, 디지털 무역에 대하여 중소기업 수출자를 지원하고 도우며, 양 당사국 영역 내 상업적 파트너를 확인하고 우수 비즈니스 인증을 확립하는 데에서의 각 당사국의 경험과 우수 관행을 교환하고 논의한다.

라. 이 협정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이용 가능한 혜택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세미나, 워크숍, 웨비나, 멘토링 또는 그 밖의 활동을 증진한다.

- 마. 중소기업 수출 상담·지원·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데 대한 각 당사국의 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 기회를 모색한다.
- 바. 당사국이 제 14.3 조에 언급된 웹사이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권고한다.
- 사. 작업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고 이 협정에 따른 무역 및 투자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 기회를 확인하기 위하여,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부속기구 그리고 그 밖의 관련 국제 기구의 작업과 함께 위원회의 작업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조정한다.
- 아. 중소기업 관련 약속 및 활동을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부속기구의 작업에 고려하도록 그들과 협업하고 그들에게 장려한다.
- 자. 이 장과 이 협정 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하고, 결과를 보고하며, 적절한 경우 향후 작업 및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권고를 공동위원회에 한다.
- 차. 중소기업이 양 당사국의 지역 공급망 및 전 세계적인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통합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한다.
- 카. 이 협정에 따른 기회를 이용하고 새로운 시장에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무역에 대한 참여를 증진한다.
- 타. 양 당사국의 영역 내 창업환경을 증진하기 위하여 청년과 여성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및 인식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교환을 촉진한다.
- 파.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, 자신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공동위원회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. 그리고

하. 이 협정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능력에 관하여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포함한, 중소기업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.

3. 중소기업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, 이 협정 발효일 후 1년 내에 소집하고 그 이후 매년 회합한다. 회의는 양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대로,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될 수 있다.

4. 중소기업위원회는 자신의 프로그램과 활동 수행 시, 적절한 전문가 및 국제공여기관과의 협업을 추구할 수 있다.

제 14.5 조

제 15 장(분쟁해결)의 비적용

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 15 장(분쟁해결)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.